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박 정·이용우·김태선

어기구 · 송옥주 · 김병기

이기헌 · 강유정 · 김정호

이학영 • 박해철 • 박홍배

민병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중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러한 저출산 원인은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있는데, 대체로 출산·보육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며,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단서 신설 및 제76조제1항).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

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③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	4	
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다</u>	
<u><단서 신설></u>	만,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	
	<u>상기업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u>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2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		

가 기간 중 최초 <u>5일</u>.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 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 정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u>10일</u> .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